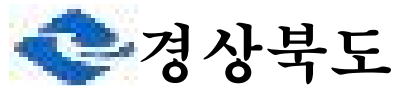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3
----------	-----

제출일자 : 2020. 8. 14.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자해득교육 정의 및 시·도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자해득교육 정의에 대한 상위 법령과 조문 일치

- 1) 문자해득교육 정의(안 제2조제1호)

나. 상위 법령에 신설된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에 대한 조항 반영

- 1)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 지정에 따른 신청, 조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의2)

다. 단순 문구 정비

- 1) 문해교육 추진주체에 관한 자구 수정(안 제6조제1항)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나. 법제심사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20. 7. 23. ~ 8. 12.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 ①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제6조제1항 중 “문해교육협의”를 “문해교육협의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1.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신설>	제5조의2(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 ① 「평생교육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제6조(추진주체 등) ① 도지사는 문해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약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 며, 효율적인 협의·조정을 위 하여 <u>문해교육협의회</u> 를 설치·운 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추진주체 등) ① ----- ----- ----- ----- ----- --- <u>문해교육협의회</u> ----- -----. ②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발췌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3(시·도문해교육센터) ① 시·도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문해교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문해교육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의2(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2. 미첨부 근거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이 수반되나.
- 별도의 신규 센터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의 과다 책정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재 문해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道문해교육센터로 지정('20.6.25)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요인 없음.
- 안 제5조의2(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는 추가비용 수반 사항이 없으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자치행정국 교육정책과 사회복지주사보 전현녕(054-880-4561)